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2호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 고시안내 ③

〈마지막회〉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5월 19일부터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 ·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 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별표 3]

설계 · 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설계업 · 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설계용역의 참여전력기술인 및 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 · 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부표 3-1 및 부표 3-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측정기관은 부표 3-1 및 부표 3-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당해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3년간의 누계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의 각각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라. 누계부실벌점이 5점이상 15점미만인 경우에는 1점, 15점이상인 경우에는 2점을 각각 감점한다.

3.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가. 발주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설계 · 감리용역 수행시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3-1 및 부표 3-2의 주요 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나. 측정기관의 장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당해 업체 및 전력기술인의 확인을 받아 부표 3-1 또는 부표 3-2의 주요 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부실벌점을 부과한 후 그 결과를 벌점부과의 업체 · 전력기술인 및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벌점총괄내역통보서에 의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부실벌점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및 전력기술인은 부실벌점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측정기관은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과된 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라. 이의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 및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표 3-1]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	○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 및 협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2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1
1.2	○ 수량산출의 소홀	
	- 설계수량 산출의 소홀로 인하여 공종별로 10% 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2
	- 설계수량이 공종별로 1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
1.3	○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일부누락 또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2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현장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1
1.4	○ 기자재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기자재의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3
	- 주요기자재의 품질 · 규격 등 적합성 검토 소홀로 인하여 기자재의 재선정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1.5	○ 용역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기술인이 용역 과업수행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
	- 참여기술인의 업무범위 및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번호	번호	벌점
2.1	○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 · 확인 소홀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 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 · 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2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	3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 확인의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2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 확인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3	○ 공정단계별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소홀	
	- 검사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 검사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4	○ 공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2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
2.5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 · 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 · 확인 소홀로 인하여 시공후 총 예정공사비가 10%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3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2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6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확인의 소홀로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번호	번호	벌점
2.7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 확인 소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 · 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	3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 ·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 ·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2.8	○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 확인 소홀	
	- 주요기자재(KS 의무화 품목제외)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토 ·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3
	- 기타 기자재의 품질 검토 ·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
2.9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으로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3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2.10	○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 보고의 소홀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1
2.11	○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2
	- 감리원이 발주자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1
2.12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50%이상의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	2
	- 동일자격 감리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3번이상 교체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1
2.13	○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 ·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 · 유도장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2.14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1

〈끝〉

"It is my intention to present-through the medium of photography - intuitive observations of the natural world which may have meaning to the spectators."
("내가 의도하는 것은 관객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자연에 대한 직관적인 관찰을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Ansel Adams(앤셀 애덤스)[미국 풍경사진작가, 1902-1984]